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영한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저 자 김영한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상이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해 주거환경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자립)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더 나은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자립을 달성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의 운영 형태에 따른 주거 형태의 실태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건축법)에 따른 설치 관련 현황과 실태를 분석함.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건축법상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청소년의 인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에 필수적인 공간 구성 및 규모 확보에 따른 설치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토지이용규제법과 건축법, 주택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기준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현장의 문제점 분석,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 공간 구성 및 규모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 확장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건물 형태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실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이 서로 상충함
 - 청소년복지시설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주거지역 주민의 청소년복지시설 입지 반대, 임대 거부 등 주거지역으로의 입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 항목을 추가 할 것은 개정 제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치 기준 개선(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개별시설은 공통 기준에서 필요 공간을 선택하여 설치하고 개별시설만의 필수 공간이나 설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공통 기준(안) 제시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공동가정 생활 최소규모 기준으로 전용면적 82.5㎡ 이상 주택형 숙소 형태를 제안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 확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차 ---
카.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러 ---
머.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치 기준 개선(안) 핵심내용

입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제1종·제2종, 노유자시설에 설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공용면적을 제외)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1실당 단기 3명, 중장기 및 자립지원시설, 회복지원시설 2명 이하(신규 설치 시설 기준 적용, 기존 시설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상호 교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휴게실/활동실/교육실 등 상호교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 ▪ 수용 정원 1명당 6.6제곱미터 (신규 설치 시설 기준 적용, 기존 시설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제곱미터 이상(신규 설치 시설 기준 적용, 기존시설 지속적 확보 필요)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23-수시04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현황	9
2.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과 설비 현황	17
III.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1. 현장 전문가 워크숍 결과	25
2. 청소년복지시설 공간 구성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8
IV. 결론	
1. 결론	43
참고문헌	47
부록	49

표 목차

〈표 II -1〉 청소년쉼터의 설치 현황	10
〈표 II -2〉 청소년쉼터의 시설 건축물 형태	17
〈표 II -3〉 시설별 주거 형태	17
〈표 II -4〉 시설별 거주 인원수 비교	18
〈표 II -5〉 청소년쉼터 평균 이용 인원	18
〈표 II -6〉 유사 시설의 법적 공간 구성 및 설비 기준 비교	20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경우 3가지 운영 형태로 운영 기간에 따라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시 쉼터는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과 언론 및 국회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기준의 개선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활동 현장을 고려한 입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의 법률에서는 용도별 건축물 기준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시설 설치 및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에서 개별시설의 설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 등 권익 보호에 필요한 필수 공간 확보 및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설치 기준이 개별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에 따라 구분되고 전문화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3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공통 기준과 더불어 개별시설별 단위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허가 및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

첫째는 어디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청소년복지시

설을 설치 가능한 장소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에서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 계획시설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토지 이용 관련 기준과 건축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별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정해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구역별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문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의 생활영역과 관련된다. 이는 청소년의 주요 활동 영역에 따라 나타나는 청소년문제 대응에 필요한 보호 활동이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의 문제이다. 이는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용도 구역이나 건축물 용도만으로 한정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용도 구역과 건축물 용도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둘째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허가 사항과 관련된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허가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령·규칙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의 목적을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입지 조건, 건물 형태, 침실, 교육 공간, 지원시설, 상담 공간, 편의 공간, 공용공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개별단위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향에서 시설 중심의 보호 및 복지 지원 측면이 높게 이루어졌으나, 미래에는 현재의 시설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의 주거권 확보와 연결되어 진다(유명희, 2012, p.229).

특히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과 주거환경 측면을 기초로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안 요구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 구성 체계와 개별 단위 시설별 필수 공간 및 시설에 적합한 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모든 종류가 전국 단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합 운영하는 곳이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및 지자체지원과 민간 운영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적용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간 구성 변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

1) 청소년복지시설 건축 및 운영 관련 설치 기준에 대한 각종 제도 분석

- ① 토지 이용 규제법,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법, 소방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거 등의 형태와 관련한 법·제도를 검토한다.
- ② 국토교통부의 주거기준과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관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불합리성을 분석한다.

2)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내용 분석

- ①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의 운영 형태에 따른 주거 형태의 실태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 ②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건축법)에 따른 설치 관련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시

- ①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일시 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내용이 건축법상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②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일시 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필수적인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치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토지이용규제법과 건축법, 주택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청소년 인권 보호 및 미래형 주거환경 개선 방향 등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인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비교 분석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체계와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숍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임시형과 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현장 전문가 12명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복지시설 연구자, 정책 집행기관인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제도적 문제점과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에 반영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3종,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각 운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현황, 주거 형태, 입지 현황, 평면도 구성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체계와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현황
- 2.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과 설비 현황

1.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현황

1)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로부터 보호, 생활 보장(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 복귀,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2023) 청소년사업안내 2권, p.191)

청소년쉼터의 주요 업무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 활동,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등을 수행한다.

청소년쉼터 시설 유형은 일시 쉼터(7일 이내 일시보호), 단기 쉼터(3개월 이내 단기 보호-최장 9개월 가능), 중장기 쉼터(3년 이내 중장기 보호-최대 4년 가능)로 구분되어 청소년보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여성가족부(2023) 청소년사업안내 2권, pp.405-406).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자립 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자원,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 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 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1년 이내(최대 2년 가능)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유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청소년 숙식 공간(생활관)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비 숙박형 이용 시설인 이용형 자립지원관과 숙박형 생활시설인 혼합형 자립지원관으로 구분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란 소년법 제32조 1항에서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아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주요 업무 내용은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 지원(법원 결정),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이며, 보호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현황

2023년 11월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을 보면 <표 II-1>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총 138개소이며, 이 중 일시 쉼터 33개소(이동형 14개소, 고정형 19개소), 단기 쉼터 66개소, 중장기쉼터 3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II-1> 청소년쉼터의 설치 현황

청소년쉼터 설치 현황			
일시 쉼터(이동형)	일시 쉼터(고정형)	단기 쉼터	중장기쉼터
14	19	66	39

주요 활동 기능으로는 일시 쉼터(이동형, 고정형)는 거리 상담, 가출 예방, 일시보호 및 단기 쉼터 연계 등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입소 기간은 7일 이내이다.

단기 쉼터는 가정 복귀 지원, 사회복귀 지원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입소 기간은 3개월 기준으로 2회 연장 총 9개월 입소할 수 있다.

중장기쉼터는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 및 자립 지원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입소 기간은 3년 이내이며 1회에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2개소, 인천 2개소, 경기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주거 안정 기반의 자립과 사례관리이며, 입소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월 이내 2회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총 1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위탁 청소년보호 및 생활 지원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립 배경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양육 환경이 결손 또는 저소득 가정의 비율이 높고, 양육과 보호가 미흡한 가정의 소년이 다시 감호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 소년심판 규칙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촉된 위탁 보호 위원 중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공동생활가정을 형성하는 이른바 사법형 공동가정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김성식, 2017, pp.12-13).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르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시설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 제40조(예산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

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12. 수련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숙박형의 경우 중장기 청소년쉼터나 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 여부와 1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단기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의 이용 여부, 1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자립 지원시설로의 변경 가능성 이용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수요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장기적인 이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비 및 종사자 요건 등을 적용토록 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요건 중 입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한 지역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3에서 해당 내용과 공간 설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별시설별 설치 기준을 보면 크게 이동형과 비 숙박형 그리고 숙박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간 구성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별 개별 기준을 통합하여 공통 기준으로 마련하고 개별시설은 필요한 공간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설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제17조 관련)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1) 고정형

구분	기준
입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건물 또는 상가 건물 ▪ 입소 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광 및 환기 가능 구조 ▪ 위생적인 취사·조리나 식기 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건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를 위한 설비를 갖춘 분리된 공간 ▪ 이동형 일시 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일시 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별도의 사무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 재해 대비 시설과 장비의 설치·구비

2) 이동형

구분	기준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
휴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침대, 소파 등 휴게용 시설 ▪ 조리 시설 및 식탁 ▪ 인터넷 및 문화공간 등 단체활동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 응급 약품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책상 및 컴퓨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동형 차량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나.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구분	기준
입지 조건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 형태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 건물, 아파트 등 ▪ 입소 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 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목욕실	▪ 남·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숙직실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 재해 대비 시설과 장비의 설치·구비
다. 청소년자립지원관	
1) 숙박형 생활시설: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구분	기준
입지 조건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 형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 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목욕실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사무실 ·숙직실	▪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 운영 가능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 재해 대비 시설과 장비의 설치 및 구비

2) 비 숙박형 이용 시설: 숙박 지원이 없이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구분	기준
입지 조건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시설 형태	▪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화장실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 설비 및 온수 공급
상담실·사무실	▪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 가능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 재해 대비 시설과 장비의 설치 및 구비
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	기준
1) 입지 조건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2) 건물 형태	·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건물 또는 아파트 등 · 입소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이고,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을 것
3) 침실	· 채광, 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공간
4)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컴퓨터 및 책상 등의 설비를 갖춘 공간
5) 숙직실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6) 상담실	·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춘 공간
7) 조리실·식당	· 채광 및 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 소독 설비를 갖춘 공간
8) 화장실·목욕실	· 수세식 화장실 · 목욕실은 세면·샤워 설비를 갖추고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간
9) 세탁·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10) 비상 재해 대비 시설	·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 재해 대비 시설과 장비의 설치·구비
비고 : 다음 각호의 시설 간에는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숙직실 또는 상담실 2.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기준	
가. 관리 규정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	

- 4)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
-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관리에 관한 장부
 -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 다) 회의록
 -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 2) 사업에 관한 장부
 -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 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퇴소자 명단을 갈음하여 감호소년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으며, 보호의 경과에 관한 서류는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 라)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 나)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및 그 증명서류
 - 다) 예산서 및 결산서
 - 라) 삭제 <2019. 7. 2.>
 - 마) 비품 관리대장
 -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 아) 감호 비용의 수입·지출 및 집행 상황에 관한 서류(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자) 각종 증명서류

다. 그 밖의 사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안에서는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과 설비 현황

위와 같은 법적 설치 기준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법상의 용도 구역 형태에 대해 정익중 외(2009)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의 경우 상가건 물 일부 사용이 27.3%, 단독건물 사용 28.4%, 단독주택 사용 30.7%, 아파트 또는 연립 13.6% 구성되어 있다.

임세희와 3인(2023)의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비교 연구에서도 주택이 아닌 건물인 상가 건물 등의 사용이 25.93% 나타나 여전히 청소년의 거주 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과의 비교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전용 건물이 69.62%인데 비해 청소년쉼터는 29.63% 수준으로 적합한 시설 구성과 운영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이 2009년 27.3%, 2023년 25.93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상가 건물 일부 사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Ⅱ-2〉 청소년쉼터의 시설 건축물 형태

구 분	상가 건물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사용	단독건물 (전용 건물)	단독주택	아파트 또는 연립	비고
%	27.3	28.4	30.7	13.6	100

* 정익중 외(2009) p.51 재구성

〈표Ⅱ-3〉 시설별 주거 형태

구 분 (단위 %)	아파트 또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단독건물 (전용 건물)	상가 건물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사용	기타
아동양육시설	8.86	8.86	69.62	11.39	1.27
공동생활가정	39.39	54.55	6.06	0	0
중장기 청소년 쉼터	25.93	16.67	29.63	25.93	

* 임세희 외 3인(2023.5) p.289 재구성

주거 공간의 경우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처벌 증가와 정신건강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 시설 내 청소년의 주거 공간 개선에서도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임세희 외 3명(2023.5), p.279).

구체적인 공간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청소년쉼터의 공간 구성 활용 형태 대한 홍봉선·남미애(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침실의 경우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나 아직은 침대 형태보다 온돌 형태로 이용하는 비율이 71.1%에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높다. 최근 조사 연구(임세희 외 3명(2023.5) 결과를 보면 시설별 거주 인원이 평균 2.8명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있으나, 황진구 외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정원이 평균 12.5명이지만 실제 이용은 12.9명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쉼터 유형별로는 거주 공간에 대한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용 아동의 실질적 주거권 확보 관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침실이나 공동 공간 등의 실질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법적으로 제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II-4〉 시설별 거주 인원수 비교

구 분	정원(평균)	현원(평균)	침실 이용 인원(평균)
아동양육시설	10.56	9.72	3.74
공동생활가정	6.85	5.9	2.5
중장기 청소년쉼터	8.11	6.87	2.85

* 임세희 외 3인(2023.5), p. 289 재구성

〈표II-5〉 청소년쉼터 평균 이용 인원

구 분	전체	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평균 이용 인원	12.9	12.3	13.3	8.5	31.6

* 황진구·김지연(2020) p.27 재구성

이 결과는 청소년쉼터의 경우를 보면 현재의 공간 기준에 따른 주요한 공간과 설비는 대부분 갖추고 운영상에도 유연한 활용도를 보이지만 청소년의 거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

서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공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인권 등에 중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을 세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은 대상 연령이 아동은 18세,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또는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서도 공간 구성 형태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적 기준에 따른 공간 구성 및 규모, 설비 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는 포괄적 기준이나 공통적 기준의 적용보다는 개별시설 단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타 유사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에 대한 공간과 설비에 대한 공통적 또는 일반적 또는 포괄적 기준을 우선 제시한 이후 개별시설별 공통 기준 사항을 유기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개별시설만의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과 설비를 추가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청소년복지시설과 유사 시설 모두 공통적인 기준으로 입지 기준, 규모 기준, 침실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거실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는 별도 제시하고, 다른 시설의 경우는 대략적인 기준제시 또는 제시하지 않는 예도 있다. 기타 생활 활동의 필수 공간(화장실, 세탁실, 목욕실, 사무실 등)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와 적합한 시설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개별시설 단위의 특별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운영상에 필요한 공간 규모를 제도화하거나 적정공간 규모로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사 시설과의 법적 공간 비교에서 볼 때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에서는 입지 기준에서 청소년보호와 성장의 측면과 개별시설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 체계 구성을 볼 때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구역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간 구성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주거권과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는 규모, 침실, 거실 공간은 포괄적 면적 기준보다는 공간 단위의 세분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 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사무실, 기타 설비 등 필요 공간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개별시설에서는 시설별 전문 공간과 공통 기준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표Ⅱ-6〉 유사 시설의 법적 공간 구성 및 설비 기준 비교

구분	청소년 복지 시설 설치 기준	아동복지시설 (공동 기준)	상담소 설치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기준	공동기숙사 설치 기준 (100명이라)
입지 기준	쾌적한 환경의 부지	유해환경 제외 지역	쾌적한 환경의 부지	쾌적한 환경의 부지	
건축물 종류	건축법 적용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1. 노유자시설				주택법 적용
규모 기준	-1명당 11㎡ 이상	- 개별 기준: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 이상 주택형 숙소 - 자립지원시설: 아동 1명당 9.9㎡	- 입소정원 10명 이상 1명당 9.9㎡ - 8명~9명 82.62㎡ - 5명~7명 69.30㎡ - 5명미만 34.62㎡ - 자활지원센터 99.15㎡	시설 유형별 규모 적용 - 일시지원시설 1명당 9.9㎡ - 생활지원시설 1명당 56.1㎡ - 상담소 82㎡	100명 이하 설치 기준 예시
침실 기준	- 남녀구분 - 냉난방 가능 공간	- 1실당 정원 3명이하 - 자립지원시설 1실당 2명	X	- 일시지원시설 1실당 6명, 1인당 6.6㎡ - 생활지원시설 세대당42.9㎡	- 1인용 9~15㎡이상 - 2인용 13~19㎡이상
거실 기준	X	- 복도/다락제외 거실 1명당 6.6㎡ - 남녀별 설치 - 자립지원시설 아동1명당9.9㎡	적정 규모와 환경 조성	- 기준 없음	- 휴게공간 (휴게물품 구비)
조리실/식당	취사/조리설비	취사/조리설비	취사/조리설비	- 적정 설비	1인당0.9~1.5㎡
화장실/목욕실	- 남녀 구분 - 적정 설비	- 변기수 아동 5명당 1개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1인당 1.2~2.4㎡
세탁/건조장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1인당 0.1~0.3
상담실	방음장치 / 칸막이	16.5㎡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생활지원시설
단체 활동실	15명 수용	시설별기준(강당, 오락실, 도서실, 심리검사·치료실)		- 도서실 설비	학습지원시설

구분	청소년 복지 시설 설치 기준	아동복지시설 (공동 기준)	상담소 설치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기준	공동기숙사 설치 기준 (100명이라)
사무실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 적정 설비 - 상담실 겸용 가능	관리실
숙직실	- 적정 설비	X	- 적정 설비		사감실
대피 시설	법적 기준(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 기준 구분유형		공동 시설 기준 개별시설 기준 사업별 시설 기준	입지 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입지 기준 시설별 규모 시설 기준 (일반기준/설비기준)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3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부록 참조)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상담소 등의 설치 기준(부록 참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부록 참조)
- * 공동기숙사 설치 기준(김홍덕(2016.2), '중학교 기숙사 생활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동과 기숙사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0.

특히 주거 공간의 경우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지 못하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 밀집도가 높은 경우 아동의 처벌 증가와 정신건강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¹⁾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형태에 따라 집단기숙사형, 소숙사 공동취사형, 소숙사 개별취사형 구분에서 집단기숙사형과 소숙사 공동취사형의 경우 식사의 여유가 없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거실이 없는 형태보다 거실이 있는 형태가 구성원 간의 교류가 높게 나타나 아동의 성장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임세희 외 3명(2023.5), p.279).

청소년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법적 설치 기준에 대한 비교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공통 기준으로 복도와 다락을 제외한 거실의 면적은 아동 1명당 6.6㎡ 이상, 침실 1개당 인원은 3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거실은 아동의 개인적 생활공간과 공동 생활공간을 모두 포함(단,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등은 제외)하며, 변기 수는 5명당 1개 이상 설치 기준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 172).

1)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이다(임세희 외 2018), 아동의 학교적응을 낮춘다(신다운, 2012), 청소년 비행을 증가하고 있다(주영선·정익중, 2019), 1인당 실사용 면적과 자존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이정화 외, 2022), 임세희 외 3명(2023.5) 재인용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82.5㎡ 이상 주택형 숙사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입소 1인당 11㎡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시설인 공용공간을 제외한 실사용 면적만을 적용하고 있음과 비교했을 때, 거실(상호교류공간)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침실당 인원 규정 등은 별도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공간이 될 것이다.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청소년쉼터의 법적 설치 기준이 인권침해 가능 요소인 점을 인식하고, 침실 정원을 단기 1실당 3인 이하, 중장기쉼터는 1실당 2인 이하로 권고하였다(임세희 외 3명(2023.5), p.282).



제3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 1. 현장 전문가 워크숍 결과
- 2. 청소년복지시설 공간 구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현장 전문가 워크숍 결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2:00 - 17:00
 장 소 : 공항철도 서울역지점 회의실 AREX B2-5호(서울역 지하 2층)
 회의내용 : 청소년복지시설별 공간 구성 및 설치 내용에 관한 건
 참석자 : 청소년쉼터(임시시설,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1명, 여성가족부 정책담당자, 청소년복지시설 담당 청소년상담개발원 연구진 총 13명의 현장 및 집행전문가가 참여함

1)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 및 건축법상 용도 구역에 관한 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역할 수행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지 기준 및 건축법상의 용도 구역을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입지 및 건축물 관련 문제는 현재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 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업무 수행의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기준 이용 건물 형태와 건축법 용도 지정 건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건물 형태로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 건물, 아파트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동일) 건축법에서는 상가 건물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노유자시설로의 변경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가임대의 경우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임차인이 승낙하지 않으며, 또한 자가 건물이라고 해도 노유자시설로의 변경에는 비용 부담이 높아 현실적인 추진이 어렵

게 된다.

또한 운영상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운영 형태가 유사한 사업인 그룹홈시스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시설로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다른 청소년복지시설과 차별화된 적용 기준이 요구된다.

둘째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상충 문제이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주거지역에 해당 시설이 입지하거나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복지시설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 외에 상업지역 내 건물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상업시설의 경우 화장실이나 욕실의 경우 공동사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용도 구역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며, 주변의 인식 등을 고려할 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조건에 일부 상업시설이 포함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호 와 4호의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실제적인 대안이 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설치 기준에 따른 공간 구성과 규모에 관한 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목적과 업무 수행에 적합한 공간 구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해 현행 법규상 청소년복지시설은 개별단위로 설치 기준과 공간 구성 및 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규모의 결정은 청소년 1인당 11㎡를 포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기준이며, 그 외 공간 구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 또는 적정 설비 등으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복지시설 중 비 숙박형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긴급입소가 이루어지고 정원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 시설 특성상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 숙박형 기준과는 구분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현행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실질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에 대해 어려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권에 따른 거주성 확보 측면과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이란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간 구성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활동과 개인 보호 측면에서 공간 규모를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교육활동 공간 등 필요한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타 유사 기관의 법적 공간 구성 및 규모 사례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청소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 보호 등의 측면에서 침실에 대한 기준, 거실 또는 단체활동장을 통합한 상호교류 활동공간 마련, 사무 공간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통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는 운영 형태가 그룹홈시스템이고, 입소 청소년 간에 문제의 발생 여지가 높아 개인 보호 측면보다는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생활 가정 형태의 공간체계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규모 기준으로 전용면적 82.5㎡ 이상 주택형 숙사 형태를 제안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 공간 및 편의 설비 구성에 관한 건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편의 설비에 대해 기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추가적으로는 학업 공간이나 화장실, 목욕실, 세탁실 등에 대한 인원 기준에 맞춘 기준의 필요성과 더불어 현장의 필요성이 높은 설비로는 WIFI 설치, 정수기 설치, 냉장고, TV, 에어컨 등으로 나타난다.

2. 청소년복지시설 공간 구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장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는 청소년쉼터(이동형, 고정형 일시 시설, 단기·중장기쉼터) 7명, 청소년자립지원관 2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명 총 11명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음의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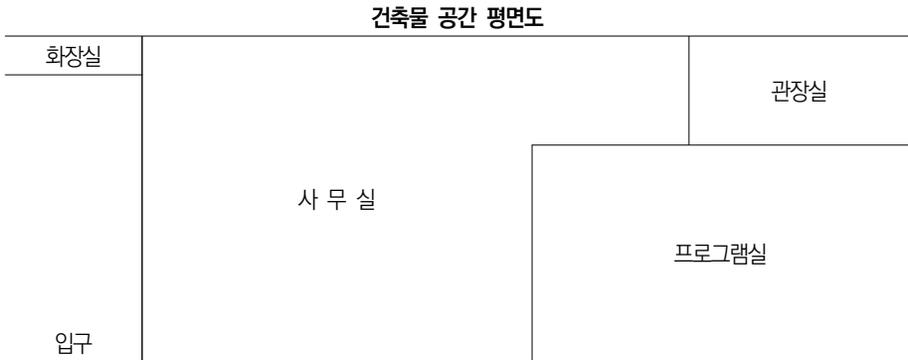
A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입지
시설 건축물의 종류	- 다세대주택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443.52㎡ - 정원 : 32명, 현원 29명 - 이용인원 : 생활관 9, 독립가구 20
시설의 호(실) 개수	- 8개호실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1인1실 - 침실형태 : 침대형, 호실당2-3인 이용 - 침실면적 : 알수없음
공용공간 규모	- 거실 및 휴게실 구비
주방	- 조리기구 구비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학업공간 구비, 단체활동실 없음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63.77㎡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호실당 화장실 2개, 세면대 2개, 목욕실 1개, 세탁실 1개

건축물 공간 평면도

다용도실	방	화장실	방	화장실	다용도실	방
	주방		거실		현관	
화장실		방		방	거실	방

A 시설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청소년들이 원룸형 시설에 개별단위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은 없다. 이는 해당 시설이 자립지원관 형태 운영으로 개인공간 확보와 생활을 위한 지원에 주축을 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 가능한 공간 구성이다.

B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입지
시설 건축물의 종류	- 전용건물(단독건물)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109.9㎡ - 정원 : 32명, 현원 50명 - 이용인원 :
시설의 호(실) 개수	- 이용시설(관련없음)
침실 규모	- 이용시설(관련없음)
공용공간 규모	- 이용시설(관련없음)
주방	- 이용시설(관련없음)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활동공간 구비
상담실 규모	- 24㎡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69㎡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정수기, 개별사물함



B 시설의 경우 숙박형이 아닌 주간 보호 복지 공간으로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며, 전용 건물로 인해 다른 공간에 대한 활용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세부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C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입지
시설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매입 임대주택)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108㎡ - 정원 : 9명, 현원 10명 - 이용인원 :
시설의 호(실) 개수	-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4인 - 침실형태 : 침대형 - 침실면적 : 38.17㎡
공용공간 규모	- 거실 18.56㎡
주방	- 조리기구 구비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거실을 활동실 겸용으로 사용
상담실 규모	-
직원 숙소	- 있음
사무실 규모	-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2개, 세면대2개, 목욕실2개, 세탁실1개
건축물 공간 평면도	

아파트 형태 구조

C 시설의 경우 총면적 대비 현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공용공간을 제외할 경우 청소년 1인당 면적은 더욱 낮을 것이다. 또한 침실도 1실당 4인으로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D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입지
시설 건축물의 종류	- 단독건물(전용건물)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173.22㎡ - 정원 : 10명, 현원 10명 - 이용인원 : 10명
시설의 호(실) 개수	- 생활시설(관련없음)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4명 - 침실형태 : 온돌형 - 침실면적 : 33.04㎡
공용공간 규모	- 거실 13.81㎡
주방	- 조리실 19.78㎡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강당 음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14.36㎡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20.37㎡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 2개, 세면대 2개, 목욕실 2개, 세탁실 1개

건축물 공간 평면도			
침실	사무실	식당	
		창고	침실
		화장실	
화장실	락커룸	거 실	
침실			
세탁실, 건조장			

D 시설은 전용 건물 중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침실당 4명으로 다소 높은 편이고 세부 공간과 편의시설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로 근린 상업지역 위치
시설 건축물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정원 : 14명
시설의 호(실) 개수	-
침실 규모	-
공용공간 규모	-
주방	-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상담실 규모	- 12.7㎡
직원 숙소	-
사무실 규모	- 180㎡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정수기
건축물 공간 평면도	

이동형 청소년복지시설(도면없음)

E 시설은 이동형 시설로 편의시설 중 청소년의 요구가 높은 WIFI 등 추가 구성이 요구된다.

F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상가
시설 건축물의 종류	- 상가건물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189.94㎡ - 정원 : 12명 - 이용인원 : 12명
시설의 호(실) 개수	- 단독호실 없음 / 남녀수면실, 상담실, 여가활동실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6명 - 침실형태 : 침대형 - 침실면적 : 개소당 26.77㎡
공용공간 규모	-
주방	- 식당 24.09㎡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여가활동실 45.48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14.79㎡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15.79㎡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상가공용시설(화장실, 세면대, 목욕실, 세탁실)

건축물 공간 평면도

여 가 활 동 실

사 무 실		상담실		
출입구	식당	세탁실	수면실(남)	수면실(여)
		샤워실(남/여)		

F 시설은 상가 건물을 활용한 시설 침실당 6명으로 구성되어 침실 면적 기준으로 볼 1인당 4.4㎡에 불과하다. 기타 시설 공간은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G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시설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271.17㎡ - 정원 : 12명, 현원 : 9 - 이용인원 : 13명
시설의 호(실) 개수	- 주택 형태 운영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1개소당 2-4명 - 침실형태 : 침대형 - 침실면적 : 개소당 12.74㎡
공용공간 규모	- 거실 : 57㎡ (거실과 단체활동실 겸용)
주방	- 조리설비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여가활동실 12-16명 이용가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8.06㎡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38.9㎡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4개, 세면대4개, 목욕실3개, 세탁실1개

건축물 공간 평면도(1층,2층,3층)

계 단	단체활동실	계 단	사 무 실		사 무 실	주 방	보일러실
			현관				상담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현관	복도	침실	식당겸 단체활동실	화장실
			침실	거실	침실		침실

G 시설은 독립건물형 단독주택을 활용한 시설이며, 세부 공간 확보가 잘 구성되어 있으나, 침실당 이용 인원이 최대 4명까지 이루어진 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H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근린상업지역
시설 건축물의 종류	- 주택이 아닌 건물(상가건물)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115.5㎡ - 정원 : 8명 - 이용인원 : 8명
시설의 호(실) 개수	- 4개 호실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 침실형태 : 침대형 - 침실면적 :
공용공간 규모	- 휴게실 있음
주방	- 조리 설비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단체활동실
상담실 규모	-
직원 숙소	- 있음
사무실 규모	-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1, 세면대3, 목욕실1, 세탁실1

건축물 공간 평면도

여 가 활 동 실

사 무 실		상담실		
출입구	식당	세탁실	수면실(남)	수면실(여)
		샤워실(남/여)		

H 시설은 상가 건물을 활용한 시설로서 침실당 이용 인원이 4명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교육 등의 공간은 상담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I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시설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330㎡ - 정원 : 15명, 현원 14명 - 이용인원 : 최대 18명
시설의 호(실) 개수	-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2명, 4명 - 침실형태 : 침대형 - 침실면적 : 개소당 10㎡
공용공간 규모	- 거실 40.5㎡ - 휴게실 9㎡
주방	- 조리시설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단체활동실 15명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12.4㎡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31.5㎡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3, 세면대3, 목욕실2, 세탁실1

건축물 공간 평면도(1층, 2층)

사무실	상담실	화장실	방	방	방	화장실
			방	방	방	화장실
현관	사무실	프로그램실	방		거실	
계단			현관	방	방	방

I 시설은 주거 지역내 단독주택을 활용한 시설로 침실의 규모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침실 면적 10㎡ 일 때 4인의 경우 1인당 2.2㎡ 수준에 불과하다.

J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주거지역
시설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원룸형태)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396.58㎡ - 정원 : 10명 - 이용인원 : 최대 10명
시설의 호(실) 개수	- 8개호실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1-2명 - 침실형태 : 침대형 - 침실면적 : 107.4㎡
공용공간 규모	- 거실 47.97㎡(단체활동실 겸용)
주방	- 조리시설 25.97㎡
교육/학업공간 / 단체활동실	- 단체활동실 겸용 거실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13.77㎡
직원 숙소	- 없음
사무실 규모	- 62.51㎡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 세면대, 목욕실, 세탁실 각호실마다 배치

건축물 공간 평면도(2층, 3층, 4층)

	원 룸	원 룸	원 룸	원 룸		화장실	사 무 실	프로그 램실	화 장 실	방	화 장 실	숙 직 실	주 방
					현관	프로그 램실							
원 룸					원 룸	소장실			창 고	방			방

J 시설은 원룸형 단독주택으로 매우 양호한 주거 기준과 공간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K 청소년복지시설	
구 분	시설 공간 적용 사례
입지지역 특성	- 근린상업지역
시설 건축물의 종류	- 전용건물(4층 사용)
시설의 규모	- 총면적 : 330㎡ - 정원 : 15명, 현원 11명 - 이용인원 :
시설의 호(실) 개수	
침실 규모	- 침실당 이용 인원 : 1~4명(1인실, 3인실, 4인실) - 침실형태 : 2층침대형 - 침실면적 : 개소당 11㎡
공용공간 규모	- 휴게실 25.8㎡
주방	- 조리실 및 식당 구비
교육/학습공간 / 단체활동실	- 단체활동실 20명(식당 겸용)
상담실 규모	- 별도 공간 구축 17.2㎡
직원 숙소	- 있음
사무실 규모	- 25㎡
편의시설 (유/무)	- 냉난방, 컴퓨터, TV, 냉장고, 개별보관함, 정수기 - 화장실3, 세면대3, 목욕실2, 세탁실2+3

건축물 공간 평면도(4층)							
창고	조리실	상담실	로 비	세탁실 화장실1 화장실2	사위실 세면대	침실	침실
창고	식당 및 프로그램실	사무실		거 실			
				침실	당직실	침실	침실

K 시설은 근린상업지역 시설로 전용 건물 중 4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침실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대 4명까지 수용하고 있는 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공간의 확보와 구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위의 11개 사례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이 개별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숙박형 청소년복지시설과 비 숙박형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과 운영 형태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일시보호시설과 단기 및 중장기 시설의 설치 운영 형태도 구분되어 진다.

사례 시설 공간 구성을 분석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입지 조건 및 건물 형태의 문제점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입지 특성이 주로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전용 건물 등에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근린상업지역 내에 입지하거나 주택이 아닌 건물의 주거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경우도 여전히 높다. 특히 일시보호시설이나 단기 시설, 회복지원시설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입지 조건과 건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항목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하거나,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상 표기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외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을 포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청소년복지시설 건물 형태에 상가 건물이 포함된 것과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중 회복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는 입지 문제 외에도 지역민의 수용 거부 상황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청소년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 사생활 보호 측면에 따른 공간 확보 부분에서 침실의 거주 밀집도가 4명인 경우가 많아 이에 지속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상호교류 부분에서의 유사 활용 공간은 공통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구분 및 규모 설정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제시된 공간 구성 실태를 보면 이동형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공통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공통 기준제시를 통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개별시설에 요구되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의 인권, 주거권 확보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소년복지시설 내에서 청소년의 이용도와 이용 시간이 가장 높은 공간인 침실, 상호교류 공간인 거실 등 휴게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 공간인 상담 공간에 대해 현재의 1명당 11㎡의 포괄적 규모 기준을 세분화하여 침실 / 거실 등 상호교류 활동공간 / 상담 공간을 별도로 제시하고, 기타 공간은 적정 규모 등 포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주간형 자립지원관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동형, 고정형)의 경우는 별도의 개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제4장 결 론

—— 1. 결론

1.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상이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자립)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통해 보다 나은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자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현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 시설의 공간 구성 실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의 확장

법·제도 분석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건물 형태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실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 워크숍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 주거지역 주민의 청소년복지시설 입지 반대, 임대 거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 영역 또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청소년과의 접근성 차원에서도 청소년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 지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현황에서도 상가 건물 또는 주택이 아닌 건물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1/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 항목을 추가 할 것은 개정 제안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 차---
- 카. 청소년복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리---
- 머.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의 공간 구성 및 규모 설치 기준 개선(안)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유사 관련 시설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상담소 등의 설치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 유사 시설의 시설 기준 구성 체계와 공간 규모 규정을 볼 때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일반기준으로 해당 공간에 대해 정의와 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공통 기준으로는 이용 인원과 면적 규모를 연계하여 설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개별시설별 별도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동형, 임시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서 같은 공간 내용을 반복 기술하고 있으며, 규모의 기준은 청소년 1명당 11㎡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현장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침실당 인원이 4명 이상으로 높게 구성된 경우가 있다.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현재의 기준이 2017년 감사원 지적 사항 중 청소년 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된 사항과 침실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침실당 크기에 따라 수용 정원을 높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침실 규모 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사 시설 적용 기준과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복지시설이 공통적인 항목에 따라 세부 공간을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침실 공간이나 공용공간 등 분리된 공간을 갖추지 못하는 열악한 곳이 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침실 규모의 적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상호교류 활동공간(거실이나 휴게공간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개별시설은 공통 기준에서 필요 공간을 선택하여 설치하고 개별시설만의 필수 공간이나 설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공통 기준(안)을 제시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공통 기준(안)

구분	공통 기준
입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제1종·제2종, 노유자시설에 설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공용면적을 제외)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1실당 단기 3명, 중장기 및 자립지원시설, 회복지원시설 2명 이하(신규 설치 시설 기준 적용, 기존 시설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상호 교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휴게실/활동실/교육실 등 상호교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 ■ 수용 정원 1명당 6.6제곱미터 (신규 설치 시설 기준 적용, 기존 시설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제곱미터 이상(신규 설치 시설 기준 적용, 기존 시설 지속적 확보 필요)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
숙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조리실·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 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건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 운영 가능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 재해 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입소 청소년의 문제 발생 여지와 그룹홈 형태의 운영 체계를 고려하여 원활한 공동생활 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확보 기준으로 전용면적 82.5㎡ 이상 주택형 숙소 형태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성식(2018), “소년보호 1호 처분 수탁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집행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대전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실무를 바탕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백혜정, 최수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홍덕(2016), “중학교 기숙사 생활공간계획에 관한 연구-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동과 기숙사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08) 희망충전소 청소년쉼터의 운영 및 성과,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4) 단기쉼터는 청소년과 함께합니다. 서울: 여성가족부.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4) 일시쉼터는 청소년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여성가족부.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4) 중장기쉼터는 청소년과 또 다른 기회를 만듭니다. 서울: 여성가족부.
-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2).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I)(II), 서울:여성가족부.
- 유명희(2012.02), 아동양육시설의 공간 계획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 제 21권 1호 통권90호, 228~239.
- 임세희·권지성·전수아·이아영(2023.5), 보호대상 아동 주거 특성이 아동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Vol.75.NO.2. 277-302.

정익중, 백혜정, 박현선, 천창암, 박현동 (2009).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김지연(2020), 가출청소년지원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소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토지이용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법>에서 2023년 12월 13일 인출.

건축법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2023년 10월 11일 인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시행규칙 별표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서 2023년 12월 13일 인출.

○ ————— 부 록

부 록

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시설을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동일한 부지 또는 건물에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중 폐업된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 상당 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의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학악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수·배수시설

- ① 급수·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2)나)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나)부터 2)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2)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4) 아동 1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2)가)부터 카)까지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가)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 및 2)바)부터 자)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2)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당 또는 오락실: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도서실: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심리검사·치료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심리검사·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로 한다.

마. 아동상담소

- 1)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추어 것
- 3) 집단지도실: 33제곱미터 이상
- 4)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5) 자료실 또는 대기실: 16.5제곱미터 이상(30명 이상 시설만 해당한다)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 기준

가. 개요

-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거실: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2개실 이상을 갖추는 것
- 3) 심리검사·치료실: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
- 2)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
- 3) 심리검사·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아동의 수가 20명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상담소 설치 기준'

상담소등의 설치 기준(제6조 관련)		
1. 입지조건 상담소등은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등은 다음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최소면적
지원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	82.62㎡
	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	69.30㎡
	입소정원 5명 미만	34.65㎡
	자활지원센터	99.15㎡
	상담소	49.59㎡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등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고, 입소정원이 8명 이상 10명 미만인 시설은 2)와 3)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으며, 입소정원이 5명 이상 8명 미만인 시설은 2), 3) 및 4)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입소정원이 5명 미만인 시설은 1), 2), 3) 및 4)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 시설을 하고, 적절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 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수·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자활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3)과 4)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실

자립자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형편에 따라 5)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의실

5) 보호실

상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9.9㎡ 이상이어야 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면적
가. 출산지원시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0명 이상 70명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20.79제곱미터×정원(명) 13.21제곱미터×정원(명)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5명 이상 30명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명)
나. 양육지원시설	5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세대)
다. 생활지원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1) 2007년 3월 29일 전 설치된 시설 44제곱미터×정원(세대) 2) 2007년 3월 29일 이후 설치된 시설 56.1제곱미터×정원(세대)
라. 일시지원시설	10명 이상 70명 이하	9.9제곱미터×정원(명)
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82제곱미터.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4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생활실, 사무실(입소정원 20세대 이하 또는 30명 미만의 시설은 상담실과 겸용할 수 있다),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과 겸용할 수 있다), 목욕실,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다만, 도서실, 목욕실 및 경비실은 입소정원 20세대 이상 또는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

- (1) 출산지원시설: 식당 및 조리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산후회복실. 이 경우 입소정원 30명 미만의 시설은 의무실을 산후회복실과 겸용할 수 있다.
 - (2) 양육지원시설: 프로그램실
 - (3) 일시지원시설: 식당 및 조리실.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3) 제2호마목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사무실(상담실과 겸용할 수 없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실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설비기준

1) 생활실

- 가)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 다) 출산지원시설의 생활실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라) 양육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주방을 갖추어야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마) 생활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주방을 갖추어야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다음과 같다.
 - (1) 2007년 3월 29일 전 설치된 시설: 세대당 27.65제곱미터 이상
 - (2) 2007년 3월 29일 이후 설치된 시설: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
- 바) 일시지원시설의 생활실 1실의 정원은 6명 이하로 하고,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별도의 상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도서실

도서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책상·의자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를 비치해야 한다.

5)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을 목욕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이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빗물·오수(汚水)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가)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나) 건물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라)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9) 경비실

시설의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경비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창고

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 식당 및 조리실

가)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채광(採光)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프로그램실

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해야 한다.

13)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산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p>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p> <p>가. 단독주택</p> <p>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p>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p>라. 공관(公館)</p> <p>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p>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 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동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품감상실, 비디오품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뉴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탁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장·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직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형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II: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백해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백해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I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환
-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동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마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유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슝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 키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 김 범 구 (서울시립청소년일시청소년쉼터·소장)
김 영 숙 (김해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김 현 주 (울산광역시 여자청소년쉼터·소장)
김 효 정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소장)
김 희 재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관장)
염 지 혜 (천안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이 병 모 (경기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관장)
이 상 분 (대구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최 성 근 (천안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이 일 영 (세나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시설장)
임 춘 옥 (예람청소년회복지원시설·시설장)
소 수 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부장)
조 의 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11월 16일

발 행 2023년 11월 2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